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2014. 3. 13. 제정

2021. 1. 16.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교원인사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의료원 비전임교원 (이하 “비전임교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전임교원의 종류) 비전임교원은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제36조제4항에 의해 임용되는 전임교원이 아닌 자로서, 그 기능 및 역할에 따라 임상의학교원, 연구전담교원, 진료전담교원으로 구분한다.

제3조(본교 다른 규정과의 관계) 비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인사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

제4조(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원 교원 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교원인사위원회는 의료원장, 해당 부속병원장, 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 및 의료원 장이 지명하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료원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1.1.16.>

제6조(권한) 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전임교원의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
2. 비전임교원의 재계약 및 승진 동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하여 의료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및 직무) ① 위원장은 교원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 ②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소집 등)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매 학기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제9조(부속병원 교원인사위원회) ① 부속병원장은 비전임교원의 임용을 제청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부속병원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② 제1항의 부속병원 교원인사위원회는 부속병원장과 진료부원장, 교육수련부장 및 부속병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부속병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1.1.16.>

제3장 임용

제10조(임용절차) 비전임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발령하고,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임용계약) ① 비전임교원을 임용하는 때에는 계약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 비전임교원은 「교원인사 규정」 제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한다. 다만, 직급이 교수인 경우에는 비전임교원임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을 4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 임용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계약) ① 비전임교원의 재계약 및 승진 사정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이 한다.

② 비전임교원은 재계약되지 아니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당연히 퇴직한다.

③ 비전임교원은 계약기간 중에는 임용계약에서 정하는 직급을 유지하며, 직급별 최저 자격 기준 및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재계약 시 승진 여부를 정한다.

제13조(임상의학교원의 자격) ① 임상의학교원은 임상과의 전문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진료, 연구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객관적 능력을 갖춘 전문의로 임상진료, 임상연구 및 임상교육을 주로 담당하며, 다음 각 호를 직급별 최저기준으로 한다.

1. 임상조교수 : 전문의로서 만 2년 이상 임상 경력 <개정 2021.1.16.>
2. 임상부교수 : 전문의로서 만 8년 이상 임상경력 또는 의료원 임상조교수 임용 후 6년 경과 <개정 2021.1.16.>
3. 임상교수 : 전문의로서 만 13년 이상 임상경력 또는 의료원 임상부교수 임용 후 5년 경과 <개정 2021.1.16.>

② 대외적으로는 '임상의학' 또는 '임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연구전담교원의 자격) ① 연구전담교원은 의료원에서 육성하는 연구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연구 및 연구교육 등을 할 수 있는 객관적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임상진료분야 등 의약분야의 임상연구 및 연구교육을 주로 담당하며, 다음 각 호를 직급별 최저 기준으로 한다.

1. 연구조교수 :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 <개정 2021.1.16.>
2. 연구부교수 : 박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 또는 의료원 연구조교수 임용 후 6년 경과 <개정 2021.1.16.>
3. 연구교수 : 박사학위 취득 후 13년 이상 또는 의료원 연구부교수 임용 후 5년 경과 <개정

2021.1.16.>

② 대외적으로는 ‘연구전담’ 또는 ‘연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진료전담교원의 자격) ① 진료전담교원은 임상과의 전문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진료 등을 할 수 있는 객관적 능력을 갖춘 전문의로 임상진료와 기타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일반진료교원, 진료명예교원, 수탁기관 진료교원으로 구분된다.

② 일반진료교원은 다음 각 호를 직급별 최저기준으로 한다.

1. 진료조교수 : 전문의로서 만 2년 이상 임상 경력 <개정 2021.1.16.>
2. 진료부교수 : 전문의로서 만 8년 이상의 임상경력 또는 의료원 진료조교수 임용 후 6년 경과 <개정 2021.1.16.>
3. 진료교수: 전문의로서 만 13년 이상의 임상경력 또는 의료원 진료부교수 임용 후 5년 경과 <개정 2021.1.16.>

③ 의료원 및 타 의료기관에서 20년 이상 교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자 또는 퇴직예정인 교원으로 진료 실적이 우수한 자를 진료명예교원으로 초빙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④ 의료원에서 수탁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장의 요청으로 수탁운영 의료기관에 진료전담교원을 둘 수 있으며, 수탁기관 진료교원의 자격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대외적으로는 ‘진료전담’ 또는 ‘진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처우) ① 의료원 비전임교원의 급여는 임용직급과 동일한 전임교원의 급여 수준을 감안하여 책정하며,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삭제 <2021.1.16.>

③ 임상의학교원 및 진료전담교원은 성과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단, 연구전담교원은 성과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021.1.16.>

제4장 복무, 신분보장, 징계

제17조(복무) ① 비전임교원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비전임교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임용계약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비전임교원은 의료원 보직을 맡을 수 있으나 학내 보직을 맡을 수 없으며, 대학(원) 교수회의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6.>

④ 비전임교원은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신분보장과 징계) ①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 동안 형의 선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진료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전임교원에 대하여는 본교「교원인사 규정」의 면직, 휴직, 직위해제,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부칙(2014. 3. 13. 제정)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 1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